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17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휴지·폐지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看做) 규정 신설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제 15453호, 2018.3.13공포, 2018.9.14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가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5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 29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j99@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26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6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창광이앤씨(손정익) ② (주)동성엔지니어링(김형철)

나. 전화번호 : ① 02-489-0816 ② 02-2041-8720

2. 명칭 : 압축 코일스프링과 링형 충격완충 장치를 설치한 완충형 와이어로프 네트를 이용한 토석류 방호시설과 이의 시공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 관리 및 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와이어로프에 압축 코일스프링과 링형 충격완충 장치를 연결하여 충격 흡수에너지를 증가시킨 완충형 와이어로프 네트를 현장에서 직접 조립하고 이것을 지반에 설치한 록볼트나 지주에 설치하여 토석류에 의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완충형 토석류방호시설과 이의 시공법이다.

<범위>

압축 코일스프링과 링형 충격완충 장치를 설치한 완충형 와이어로프 네트를 록볼트나 지주에 조립하여 설치하는 완충형 토석류 방호시설과 이의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80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7.11.29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의 공공성장화와 관련하여,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해당 정비사업구역의 일부 임대주택 물량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이에 필요한 주택매입절차, 입주자선정 및 임대운영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업형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중 현금청산세대 수 및 기업형임대주택의 5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가격은 민간임대주택 매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함(안 제71조의2)